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26.(수) 11:00 < 4.27.(목) 조간 > 배포 2023. 4. 26.(수)

#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

**- 면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착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 | 기존 | | 개선 |
|---|---|---|---|
| **해외수입** | 선하증권(B/L) 발급 지연으로 통관에 3~5일 소요 | ➜ | 제출서류 간소화(B/L 제외)로 당일 통관 및 시간·비용 절감 가능 |
| **국내제조** | 면제확인기관에 이메일로 면제신청 | ➜ | 온라인 면제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이력관리 지원 |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설명회 행사개요
2. KC인증 면제확인 제도 개요

| 담당 부서 | 국가기술표준원<br>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이응로 (043-870-5440) |
|---|---|---|---|---|
| | | 담당자 | 주무관 | 류도열 (043-870-544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설명회 행사 개요**

## □ 추진 배경

○ 최근 KC인증 면제확인제도에 대한 기업애로 해소 및 면제확인 관련 불법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KC안전관리제도 및 면제확인 제도개선 내용을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 □ 행사 개요

○ **(행사명)**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 추진계획 설명회

○ **(일시/장소)** '23. 4. 26.(수), 14:00~16:00 / 엘타워 루비홀(서울 서초)

○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참여대상)** 안전인증·확인 관련 기업 담당자 및 관세사 등 100여명

## □ 주요 일정(안)

| 구분 | 시간 | 주요일정 | 비고 |
|---|---|---|---|
| 1 | 14:00~14:05 ('5) | 일정소개 | - |
| 2 | 14:05~14:10 ('5) | 인사말씀 | 국가기술표준원<br>김상모 국장 |
| 3 | 14:10~14:30('20)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 국가기술표준원 |
| 4 | 14:30~14:50('20) | 면제확인 제도개선 추진방향 | |
| 5 | 14:50~15:15('25) | 전기용품 KC안전인증 FAQ | 한국기계전기전자<br>시험연구원 |
| 6 | 15:15~15:40('25) | KC안전인증 면제확인 FAQ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7 | 15:40~16:00('20) | 질의응답 | - |

**붙임 2** **KC인증 면제확인 제도 개요**

## □ 개요

○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인증을 취득해야하나 **특수한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 **면제확인기관**을 통해 **인증 면제**(전안법 제6조)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산업용 등이 해당

< 면제요건 및 면제확인기관 >

| 분류 | 요건 | 면제확인기관 |
|---|---|---|
| 연구·개발 | 학교, 연구소 등 사용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 인증시험기관에서 사용 | |
| 전시회, 시장조사 등 | 전시, 홍보 등 비판매목적 | |
| 특수구조용품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 | |
| 산업용 | 제조업, 전기업 등 사용 | |
| 수출용 |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 |

## □ 처리절차

○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면제확인**을 **신청**

- **면제확인기관**은 해당제품이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면제확인서 및 면제확인표시*** **발급**

* 면제표시는 KC인증 도안을 사용하며, 하단에 면제검사필 표시를 부착하여야함

| 신청인 | → | 면제확인기관 | → | 신청인 |
|---|---|---|---|---|
| 면제확인신청 | | 요건확인 검토 및 면제확인서 교부 | | 제품에 면제표시 부착 |

## □ 면제확인 현황

| 구분 | 2020 | 2021 | 2022 |
|---|---|---|---|
| 안전인증 | 12,620 | 15,411 | 12,811 |
| 안전확인 | 8,997 | 9,945 | 10,609 |
| 공급자확인 | 10,711 | 8,743 | 8,781 |
| 소계 | 31,157 | 34,099 | 32,201 |

## □ 면제요건별 제출서류

| 연번 | 내용 | 붙임서류 |
|---|---|---|
| 1 |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제품설명서, 인보이스<br>·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br>· 학교사업자등록증<br>· 계약서(물품공급시) |
| 2 |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의 연구개발용 | · 제품설명서, 인보이스<br>· 방송국허가증<br>· 계약서(물품공급시) |
| 3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 · 제품설명서, 인보이스<br>· 사업자등록증<br>· 계약서(물품공급시) |
| 4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 제품설명서, 인보이스<br>· 전시회참가확인서<br>· 부스배치도<br>· 사업자등록증<br>· 계약서(물품공급시) |
| 5 |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하는 것 | · 제품설명서, 인보이스<br>· 사업자등록증<br>· 계약서(물품공급시)<br>·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6 | 수입된, 안전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터 이내로 수입하는 것 | · 제품설명서, 인보이스<br>· 사업자등록증<br>· 해당 전기용품의 인증서<br>· 계약서(물품공급시) |
| 7 | 그 밖에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느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전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br>* 특수설계, 산업용(전기업, 제조업 등) | · 제품설명서, 인보이스<br>· 계약서(물품공급시)<br>· 납품 증빙서류<br>· 사업자등록증<br>· 시장조사계획서 |